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	496,220,963	14,886,629
1.	일반회계	477,624,337	14,328,730
2.	특별회계	18,596,626	557,899
	의료보호기금	1,136,409	34,092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106,999	63,210
	주차장	14,031,558	420,947
	주거환경개선사업	346,982	10,409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285,252	8,558
	지하수관리	689,426	20,683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4,685,486천원,

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는 2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간,

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

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, 보통조정교부금,

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

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